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37
----------	------

제출년월일 : 2020년 4월 3일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1.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의 개정사항('20. 1. 1.字 시행)을 반영하여 서울시 공무원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실현할 수 있는 복무 제도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출장사항 변경에 대한 예외적 사후보고, 공무상 휴직·병가 사용시 연가가산 적용, 연가의 저축제도, 임신검진휴가 및 남성공무원의 배우자 유산·사산 휴가, 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 특례 등을 신설함.(안 제8조, 제19조, 제20조의4 및 제24조)
- 나. 그 밖에 권장 연가 일수 운영 일정 및 공지사항 등을 보완하고, 상위 법령의 조문에 따라 용어 및 표현을 정비함(안 제8조, 제21조, 제20조의3 및 제25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참조
- 다. 기 타
- 1) 신·구조문 대비표: 별도 첨부
  - 2) 입법예고('20. 2. 6.~2. 26.) 결과: 의견없음

##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명을 받아 출장하는”을 “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으로, “공무수행을 위하여”를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로, “다하여야”를 “다해야”로, “안된다”를 “안 된다”로 한다.

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그 업무를 다하지 못 하거나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직위해직기간”을 “직위해제기간”으로 한다.

제1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

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8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

1. 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
2. 제20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

제20조제5항 표 외의 부분 중 “연가일수”를 “연가일수(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20조의4 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제20조의3제1항 중 “권장 연가일 수를 10일 이상으로”를 “10일 이상의 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로 한다.

제20조의3제2항제1호 중 “7월 1일부터 15일 이내”를 “6월 1일부터 7월 31

일까지의 기간 중”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9월 30일”을 “10월 31일”로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된다.

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
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로 휴직을 한 경우
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
4. 30일 이상 연속된 특별휴가를 사용한 경우
5. 공무원이 사망한 경우

제21조제1항 본문 중 “연가일수”를 “연가일수(결근의 경우에 한정하여 제20조의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1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 이상의 교육훈련

제2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

제24조제5항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 제1호(중전의 제2호) 중 “12주 이상 15주”를 “15주”로 한다.

제24조제6항부터 제15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3항(중전의 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3명”을 “2명”으로 한다.

- 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2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 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제2항, 제18

조,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

제25조 단서 중 “휴가일수가”를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5]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휴가 기준(제24조의2 관련)

1.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등 근무

가. 소속기관의 장은 토요일, 공휴일 또는 정상근무일이 아닌 날(이하 "토요일등"이라 한다)에 근무를 한 시간선택제공무원등에 대해서는 그 다음 정상근무일을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기관의 업무사정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정상근무일을 지정하여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나. 토요일등에 근무를 한 시간이 휴무하게 하는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보다 적을 경우에는 가목을 적용하지 않는다.

2. 휴가일수 계산 등

가. 휴가일수는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정하는 등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日) 단위로 계산한다.

나. 휴가기간 중의 근무하지 않는 날,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算入)하지 않는다. 다만, 연가를 제외한 휴가기간이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근무하지 않는 날과 토요일 및 공휴일을 산입한다.

다. 휴가기간을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하고,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3. 연가

가. 연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이 연도 중 변경된 경우에는 주당 근무시간이 같은 기간별로 비례하여 계산한 연가시간을 각각 합산하여 산정한다.

$$\text{제18조에 따른 재직기간별 연가일수} \times \frac{\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가에서 뺀다.

다. 제4호나목에 따라 계산한 병가 중 연 6일을 초과하는 병가는 해당 시간을 합산하여 연

가에서 뺀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라.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권장 연가 시간은 시장이 정하는 권장 연가 일수에서 해당 공무원의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권장 연가 일수}}{\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 4. 병가

가. 병가는 시간 단위로 실시하며,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frac{\text{제2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병가 일수}}{\text{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frac{\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text{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 \times 8$$

나. 가목의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을 합산한 시간이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의 1일 평균근무시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3호다목에 따라 연가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병가일수에 포함하여 계산하지 않는다.

#### 5. 특별휴가

가. 임신 중인 여성공무원은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1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권 보장시간을 받을 수 있다.

나. 만 5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24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 육아 등을 위해 연속하여 4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2시간(4시간 이하 근무하는 날에는 1일 최대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8조(출장공무원) ① <u>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개인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하여서는 안된다.</u></p> <p>② <u>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임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u></p> <p>③~④ (생략)</p> <p>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제18조에서의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제25조제1항부터 제3항의 규</p>	<p>제8조(출장공무원) ① ----- <u>명에 따라 정규 근무지 외의 장소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 해당 공무 수행을 위해 ----- 다해야 ----- 안 된다.</u></p> <p>② <u>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간 내에 그 업무를 완수해야 하며, 그 업무를 다하지 못 하거나 출장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체 없이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속히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 긴급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사후에 보고할 수 있다.</u></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19조(재직기간의 계산 등) ① --- ----- -----</p>

현 행	개 정 안
<p>정에 따르되, 연월일수(年月日數)로 계산하며, 휴직기간, 정직기간, <u>직위해직기간</u>, 강등처분에 따라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넣어 계산한다.</p> <p>1.~3. (생 략)</p> <p>② <u>해당 연도에 결근·휴직·정직과 직위해제 및 강등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다음 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하여 계산한다.</u></p> <p>1. <u>병가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u></p> <p>2. <u>제20조제5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 받지 못하고 남은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u></p>	<p>----- -----<u>직</u> -----<u>위해제기간</u> ----- ----- ----- ----- ----- ----- ----- -----</p> <p>1.~3. (현행과 같음)</p> <p>② <u>해당 연도에 결근·정직·강등·직위해제 사실 및 제2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간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다음 해에 한정하여 제18조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더한다.</u></p> <p>1. <u>병가(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는 제외한다)를 받지 아니한 공무원</u></p> <p>2. <u>제20조제4항에 따른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연가일수가 남아있는 공무원</u></p>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④ (생략)	제20조(연가계획과 허가) ①~④ (현행)

현행	개정안
<p>략)</p> <p>⑤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에게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가 없거나 해당 연도의 남은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 같은 조에 따른 재직기간 구분 중 그 다음 재직기간의 연가일수를 다음 표에 따라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p> <p>(표 생략)</p> <p>&lt;신설&gt;</p> <p>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시 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 사용을</p>	<p>행과 같음)</p> <p>⑤ ----- -----연가일수(제20조의 4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포함한 다)----- ----- ----- ----- ----- ----- ----- -----</p> <p>(표 현행과 같음)</p> <p>⑥ <u>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제18조에 따른 연가일수 또는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해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의 장은 연가 사용에 따른 업무대행자 지정, 인력 보충 등 원활한 업무 수행과 자유로운 연가 사용 보장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u></p> <p>제20조의3(연가 사용의 권장) ① -- -----</p>

현 행	개 정 안
<p>촉진하기 위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소속 공무원이 그 해에 최소한으로 사용하여야 할 <u>권장 연가일수를 10일 이상으로</u> 정해 공지해야 한다.</p>	<p>----- ----- ----- <u>10일</u> 이상의 <u>권장 연가 일수와 미사용 권장 연가 일수에 대한 연가보상비 지급 여부를</u> ----- -----.</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속 공무원이 권장 연가 일수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권장 연가 일수 중 미사용 연가 일수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p>	<p>② ----- ----- ----- ----- ----- -----.</p>
<p>1. 매년 <u>7월 1일부터 15일 이내</u>에 소속 공무원별로 권장 연가 일수 중 사용해야 할 연가 일수를 알려주고, 소속 공무원이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1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하도록 촉구</p> <p>2. 소속 공무원이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연가의 사용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그 해 <u>9월 30일까지</u> 제1호에 따라 알려</p>	<p>1. ----- <u>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의 기간 중</u> ----- ----- ----- -----</p> <p>2. ----- ----- -----<u>10</u> <u>월 31일</u> -----</p>

현 행	개 정 안
<p>준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연가 일수의 사용시기를 정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통보</p> <p>&lt;신 설&gt;</p>	<p>----- ----- -----</p> <p>제20조의4(연가의 저축) ① 공무원 은 연가보상비 지급대상인 연가일 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 으로 이월·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 다.</p> <p>② 제1항에 따라 이월·저축한 연 가일수는 이월·저축한 다음 연도 부터 10년 이내에 사용하지 않으 면 소멸된다.</p> <p>③ 제2항에 따라 소멸된 저축연가 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 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가보상 비를 지급한다.</p> <p>1. 법 제6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직권면직된 경우</p> <p>2. 법 제63조제1항 각 호의 사유 로 휴직을 한 경우</p> <p>3. 제22조제2항에 따른 병가를 30 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p>



현 행	개 정 안
<p>1.~3. (생 략)</p> <p>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19조에 따른 1개월 이상의 국내외 위탁교육훈련</p> <p>5. (생 략)</p> <p>③~④ (생 략)</p> <p>제24조(특별휴가) ①~② (생 략)</p> <p>③ <u>여성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u></p> <p>④ (생 략)</p> <p>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 그 공무원이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유산·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p> <p>1. <u>유산 또는 사산한 공무원의 임신기간(이하 "임신기간"이라 한다)</u></p>	<p>1.~3. (현행과 같음)</p> <p>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교육훈련으로서 1개월 이상의 교육훈련</p> <p>5. (현행과 같음)</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4조(특별휴가)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u>여성공무원은 생리기간 중 휴식을 위해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임신기간 중 검진을 위해 10일의 범위에서 임신검진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u></p> <p>④ (현행과 같음)</p> <p>⑤ ----- ----- ----- ----- -----.</p> <p>&lt;삭 제&gt;</p>

현 행	개 정 안
<p><u>이 11주 이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5일까지</u></p> <p>2. 임신기간이 <u>12주 이상 15주 이</u> 내인 경우 : 유산 또는 사산한 날부터 10일까지</p> <p>3.~5. (생 략)</p> <p>&lt;신 설&gt;</p> <p>⑥~⑪ (생 략)</p> <p>⑫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p> <p>1.~2. (생 략)</p> <p>⑬~⑮ (생 략)</p> <p>&lt;신 설&gt;</p>	<p>1. ----- 15주----- ----- -----</p> <p>2.~4. (현행 제3호부터 제5호까지와 같음)</p> <p>⑥ 배우자가 유산하거나 사산한 공무원이 신청하면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중 3일의 유산휴가 또는 사산휴가를 주어야 한다.</p> <p>⑦~⑫ (현행 제6항부터 제11항까지와 같음)</p> <p>⑬ ----- ----- -----2명----- ----- -----.</p> <p>1.~2. (현행과 같음)</p> <p>⑭~⑯ (현행 제13항부터 제15항까지와 같음)</p> <p>제24조의2(시간선택제공무원 등에</p>

현행	개정안
<p>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u>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u></p>	<p>대한 휴가에 관한 특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제2호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한시임기제공무원, 같은 영 제3조의5제1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같은 영 제38조의15제1항 본문에 따른 시간선택제전환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공무원등”이라 한다)에 대한 휴가는 제15조제2항, 제18조, 제20조의3제1항·제2항, 제21조제3항·제4항, 제22조, 제24조제4항 및 제25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5에 따른다.</p> <p>제25조(휴가기간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 ----- ----- -----연가를 <u>제외한 휴가기간이</u> ----- ----- -----.</p>

서울특별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략)

**3. 미첨부 사유**

본 조례개정안은 공무원의 휴가 등 복무와 관련한 상위법령의 개정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에 해당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서울특별시 인사과 박종석 (☎ 2133-5725)**